

# 2021년 국가대표 임원 선발 공고

## 1. 선발근거

; 관련근거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 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 2. 선발인원 : 8명

- 감독 1명
- 코치 1명
- 트레이너 00명
- 보조트레이너 00명

※ 대상자 없을 경우 직무대행 운영하며, 보조의 경우 추후 추가 확충

## 3. 선발 대상

가. 관련근거 대한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절차)**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해당 가맹단체 전문 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 · 추천하면, 해당 가맹단체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면 이후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정한다. <전면개정 ‘21.3.22.>>

②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장애인력비협회에 의하여 종목 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로서 자격을 갖는다.

③ 트레이너는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 · 추천하면 가맹단체의 장이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 <신설 ‘21.3.22.>>

④ 국가대표 지도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신설 ‘21.3.22.>>

**제5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삭제 21.3.22.>>

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대표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 한다.  
<일부삭제 21.3.22.>

④ 국가대표지도자 선발은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해당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선수 선발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 이상)의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3. 28.> <일부개정 21.3.22.>

2. 훨체어럭비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3. 장애인력비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훈체어럭비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지도자(감독, 코치) 구성 시 훈체어럭비 선수 출신이 우선 적용된다. <개정 2018. 3. 28.>

③ 감독, 코치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개정 21.3.22.>

④ 패럴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유형별 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장애인력비협회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단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1.3.22.>

⑤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3. 28.> <개정 21.3.22.>

### 부 칙 (2021. 03. 22.)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1.03.22.>

② 이 규정 제10조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신설 21.03.22.>

③ 이 규정 제10조제7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신설 21.03.22.>

## 나. 선발대상

구분	수당	인원	주요내용
감독	급여제 시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6조에 의거</li> <li>-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럭비) 자격 소지자</li> <li>- 훈체어럭비 지도자 자격증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발행)</li> <li>- 기타 지도사 자격증 (휠체어럭비)</li> </ul>
코치	급여제 시행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6조에 의거</li> <li>-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럭비) 자격 소지자</li> <li>- 훈체어럭비 지도자 자격증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발행)</li> <li>- 기타 지도사 자격증 (휠체어럭비)</li> </ul>
트레이너	100,000원/1일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자격 소지자</li> <li>- 트레이너 관련 자격 소지자</li> <li>- 물리치료사 (국가공인)</li> </ul>
보조 트레이너	50,000원/1일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체어럭비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li> <li>- 심판, 지도자, 등급분류사등</li> </ul>

※ 수당 내에 교통비 포함되며, 세금공제 후 지급. (식비 숙박비의 경우 별도)

## 다. 급여제 현황

구분	월급여		비고
	감독	코치	
무직장	5,000,000원	4,500,000원	- 4대보험 범정부담금의 경우 예산 내 편성
유직장	4,000,000원	3,500,000원	

## 4. 선발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1. 4. 2.(금) ~ 4. 12.(월)	• 모집 공고	4. 12.(월)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021. 4. 13.(화)	• 서류 전형 검토	
2021. 4. 14.(수) ~ 4. 19.(월)	• 면접 및 운영발표 ※ 면접 및 발표 일정 개별 통보	면접장소 및 일시 추후 공지
2021. 4. 21.(수)	• 합격 통보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 5. 접수 및 제출서류

구분	자격기준	비고
접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메일 접수 - koreawheelrug@hanmail.net</li> <li>「2021년 국가대표_○○○」으로 발송</li> <li>직접 접수 (접수처 참고)</li> </ul>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룸 1층 104호 대한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 선발 담당자 앞</li> </ul>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1부 ※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li> <li>이력서 1부</li> <li>자기소개서 1부(자율 형식)</li> <li>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li> <li>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군 전역사항 포함)</li> <li>2021년 국가대표 운영계획서 1부 (감독, 코치)</li> <li>경력증명서 각 1부</li> <li>자격증 사본 각 1부</li> <li>PPT 발표 1부 (감독, 코치)</li> <li>- 주요내용 2021코로나 대응 훈련방안, 2020-2022 중장기 계획(안)</li> </ul>	

※ 면접 및 발표 일정은 합격자에 의해 개별 통지 예정

## 6. 결격대상

### ○ 관련근거 대한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1.03.22.>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혀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신설 21.03.22.>
  - 가. 폭력,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1.03.22.>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 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1.03.22.>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1.03.22.>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신설 21.03.22.>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1.03.22.>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 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신설 21.03.22.>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신설 21.03.22.>

## 7. 기타(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최종합격자가 자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 조사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력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력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2-447-3717 / 김희수 과장 )

**대한장애인력비협회**